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4. 7. 3.(목)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

##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0시 0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18명이 신청하였습니다.

###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4년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24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25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 최성준 위원장

- 제25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 교통제주FM방송국 (2014-26-087)

###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난 1월에 접수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제주 FM방송국에 대한 허가심사 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를 말씀 드리면 1월에 도로교통공단이 허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서 미래부에 기술심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대해서 미래부는 주파수 지정 등 방송국 개설 허가에 필요한 기술적 심사항목을 모두 만족시킨다는 결과를 회신해 왔습니다. 허가심사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신청인은 도로교통공단이고, 심사대상은 교통제주FM방송국이며, 방송구역은 제주도 일원으로 하는 것으로 허가를 신청해 왔습니다. 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안)을 말씀 드리면 방통위가 제시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께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심사위원 자격과 수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기준 및 배점입니다.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해당 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방송국이 개설되는 점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

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신규 방송국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점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사항목별 점수를 말씀 드리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0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250점,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200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15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5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50점, 그리고 신청법인의 최근 5년간 관련법령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감점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에 위임하여 결정코자 합니다. 허가여부 결정 기준입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에서 650점 이상 획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하고자 합니다. 물론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신청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본 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 청취자 의견을 청취하고, 7월 20일경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희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할 때마다 주로 이야기됐던 것이 새로운 미디어들이 이 시장에 나타나면서 저희가 정책적인 측면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그것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된 이슈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허가 심사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도로교통공단이 전국에 현재 몇 개의 교통 FM방송국을 가지고 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지금 10개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역은 대략 어디어디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인천, 경기, 강원 지금 충북과 제주만 빼고 모두 다 있는 셈입니다. 물론 서울시는 TBS가 별도로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요즘 자가운전자든 영업으로 운전하는 분들이든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많이 이용하는데 교통방송에 대한 필요성, 교통방송을 통해 교통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내비게이션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과연 교통방송이 어느 정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유익하고 유용한지, 교통방송의 청취율 변화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부분은 없었고, 허가심사를 진행하면서 자체적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부분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물론 저희가 방송국 허가라는 측면에서 방송법에 따라 미래부의 기술심사 결과 문제없다고 통보받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다른 새로운 뉴미디어에 대해서 시장의 트렌드(trend)나 기술적인 변화를 다 고려하면서 일을 해 나가야 하는데, 물론 저는 이 허가심사 계획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 굉장히 다양화해지면서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스마트폰 앱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효용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청취자들이 어느 정도나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측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이것이 제주지역에 교통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한 FM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지만 주파수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또 기술변화에 따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교통방송국을 허가함에 있어서도 법에서 정한 협의의 방송 측면에서만 고려하지 말고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심사위원회를 보면 '관련학과 교수', '관련 분야 종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말하는 관련이라는 것은 폭넓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우선 문건상으로 보면 방송미디어 관련학과 교수, 경영·회계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이렇게 앞부분에 구분된 영역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영역의 분들도 모셔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바로 그 측면 때문에 그러는데 예를 들어 방송미디어 분야 2명, 기술 분야 1명 이런 면... 협의의 방송전문가만이 아니고, 뉴미디어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 있는 분을 초청해서, 기술을 넘나들면서 시장의 변화를 잘 알고 있는 그분들이 리뷰(review)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분야라고 해서 꼭 방송기술 내지는 주파수 기술전문가, 이렇게만 보지 말고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그런 취지에서 폭을 넓혀서 심사위원도 모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주신 의견은 아마도 심사배점과 관련해서 들어 있는 내용과 관련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 배점을 과거에 비해서 상향 조정하는 부분도 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제작 부분이나 그 지역에 꼭 그것

이 필요한지, 또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배점을 좀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이기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지역적·사회적 필요성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또 편성 적절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정하게 제대로 잘 심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허가심사 기본계획은 전에 해 오던 것에 준해서 만든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항목 배점 같은 것인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오늘 의결하면 이 계획대로 하는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제일 높은 배점이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250점이고,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200점이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00점이고, 그다음에 운영의 문제인데 이 방송이 보도나 시사토론 같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방송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낸 것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보도나 시사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는 교통정보 안내를 주로 하는 방송이라면 이 배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보도나 시사토론을 한다면 방송의 공적책임이나 공정성이나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이 항목의 비중이 제일 높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의 기획·편성과 제작계획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배점(안)에 동의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교통방송이 최초 허가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97년입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도로교통공단 쪽은 '97년이었고, TBS라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90년도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TBS는 별도로 하더라도 공단에서 교통방송을 설립한 것이 벌써 17년이 지났고 전국적으로 10곳이 있다면 이것이 방송국 규모로 보면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제가 하나 여쭙 보고 싶은 것이 교통방송을 허가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의 기본적인 정책, 즉 정책기조는 무엇입니까? 왜 교통방송을 설립하는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일단 '90년대 초반, 특히 지금처럼 그렇게 내비게이션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제가 들어 왔었고, 또 주파수 측면도 고려해서 국민적 수요가 있다고 해서 결정한 것이고, 그 후로는 어떻게 보면 지역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우리가 쪽 해 왔다고 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보면 17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서 이기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교통방송에 대한, 즉 교통정보에 대한 의존도보다도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교통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해 훨씬 바로바로 속보성이 있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지금 17년이 지난 현재로 본다면 당초의 정책목표들을 조금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시대적인 변화, 미디어이용 환경변화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 17년 동안 10곳을 허가를 내 주면서 위원회에서 교통방송 허가정책과 관련해서 아마 리뷰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방송평가 외에 전체적으로 중간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우선 금년도 연구과제는 이미 다 결정됐기 때문에 내년쯤 전반적으로 우리가 수요 측면에서 평가해보고 어떻게 이것을 발전 또는 개선시킬 것인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어쨌든 금년까지 교통방송 허가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교통방송이 현실적으로 보면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단히 중요한 매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교통정보 외에 지역행정이나 의료나 복지, 특히 재난방송과 관련된, 물론 이것이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보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편성, 그다음에 공익성의 실현성, 공적책임 이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의 입장들이나 변화된 환경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지금 주파수와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방송사들이 설립되어 있어서 사용가능한 주파수 대역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제주교통방송 말고 혹시 다른 방송을 개설하겠다는 신청이 그동안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방송 등에서 보조국들 지역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늘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몇 개 정도 들어와 있지요?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방송국 개설에 대한 부분은 4~5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조국은 10개 이상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신청이 들어온 그 방송국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주파수가 불가능해서 아예 검토가 안 되는 것입니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먼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주파수 여건에 대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심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은 저희가 거부하거나 반려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제주교통방송은 주파수 문제는 해결이 됐다?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기술적인 심사는 다 완료되어서 미래부에서 통보를 받은 부분입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어쨌든 지금 주파수와 관련해서 여유대역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각 방송사들이 예를 들어 보조국을 설치한다고 할 때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우리 나름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서 없는 주파수 중에서도 어떠한 방송에 주파수를 먼저 배려해야 할 것인가 하는 순서를 정해서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연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 주파수 대역 자체가 아날로그입니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아날로그입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라디오의 경우에 디지털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 라디오 허가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날로그 라디오FM에 관한 허가 부분은 전국적으로 주파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라디오를 디지털 전환하면 주파수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대한 부분들은 할 수 있는데, 라디오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아직 방송사업자가 이것을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적으로 저희와 미래부가 라디오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반을 같이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면 상임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디지털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기 전까지 아날로그 상태에 있어서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 문제에 관해서 종합적인 우리 나름대로의 시각을 정리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우리가 허가와 재허가·재승인할 때 어떻게 보면 신청을 받으면 그것을 그때 검토하고 약간 수동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거의 선례 답습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 이야기가 나와서, 특히 전문 장르별로 교통방송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을 때 과연 거기에서 방송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교통정보만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교통과 관광이 늘 같이 묶여 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제주지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외국 관광객을 생각하면 영어 방송만 생각했는데, 외국어 중에서도 중국어로 한다든지 이렇게 방통위가 좀 더 시장 전체 흐름을 잘 분석하면서 정책의지가 담길 수 있는 허가 업무수행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부에서 '기술심사 결과, 주파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했던 배점 심사기준대로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제주지역의 교통정보에 대한 수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채널이나 루트, 미디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교통방송을 허가해 주면 이 방송은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중에 결국 우리가 허가해 주면 수익의 문제가 생기고, 또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문제가 생기니까, 하여튼 지금보다는 좀 더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허가정책도 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큰 틀 내에서 우리가 수동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수요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전체적인 허가의 제도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큰 방향이라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의견은 교통방송을 비롯한 또 주파수와 관련한 허가의 큰 틀을 한 번 점검해 보고, 또 각 허가대상 방송의 의미, 그 내용에 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각각의 허가에 다 투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이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이의가 있으신 것은 아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습니다.

## 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4-26-088)

###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지원고시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미디어렐별 결합판매 평균비율과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규모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 드리면 올해 5월 23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6월 11일까지 행정 예고를 통해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 당시에 회계법인의 검증결과를 한 번 확인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6월 19일~21일까지 그 회계법인의 검증결과를 점검하였습니다. 사업자 의견수렴 결과 및 검토의견입니다. KOBACO, KBS, MBC, 지역MBC 등에서는 공영렐의 결합판매 비율이 민영렐보다 높아 KOBACO의 중소라디오 판매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민영성격이 강한 라디오는 민영렐으로 이관해 방송사 소유구조에 따른 공·민영렐 지원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미디어크리에이트, SBS, 지역민방 등에서는 총 매출액대비 총 광고매출 지원 부담률은 민영렐이 오히려 더 높고, 공영렐과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12년 고시 제정 시에도 민영렐은 기존 대형매체 대비 56억원을 추가 부담하였기 때문에 매체 추가 지정은 지역민방과 OBS 지원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실무진의 검토의견은 미디어렐별 지원대상 중소방송사 재지정 문제는 방송사업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고 관련된 정책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므로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내부 논의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개정안 내용입니다. 먼저 <별표1>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입니다. 영업보고서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직전 회계연도 5년간('09년~'13년) 미디어렐의 결합판매 총매출액을 미디어렐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그렇게 계산한 결과, 한국방송공사 및 (주)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KOBACO의 결합판매 평균비율은 12.4213%입니다. 그리고 (주)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인 미디어크리에이트의 결합판매 비율은 8.50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내용 중 <별표2>입니다.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별표1>과 마찬가지로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지원대상 사업자의 결합판매 매출액을 미디어렐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규모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관보 게재 후 고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 개정(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사무처의 검토의견에 미디어렐별 지원대상 방송사 재지정 문제는 방송사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침해한 사안이므로 이번에 재조정하지 않고 더 연구·검토해서 다음에 그 문제를 검토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관계가 침해한 사안이므로' 그 말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가 침해하면 할수록 방통위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더 많은 논의를 해서라도 정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처음 보고안건으로 어느 정도 토론했을 때도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봤을 때 비단 미디어렐별로 지원대상 사업자 일부 조정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물론 과거 돌이켜보면 어렵지 않은 해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방송시장과 경계 영역적인 큰 틀에서 미디어시장의 전반적인 환경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직접적으로는 방송광고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무처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업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하는 이 고시에서 일부 조정한다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는 이야기지만 큰 틀에서, 진짜 좀 더 큰 변화를 시도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어서 결론적으로 이 고시내용을 조금 조정한다고 해서 지금 방송사업자들이 전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해관계가 침해하기 때문에' 그 말은 적절하지 않고, 방통위가 결합판매 지원고시뿐만 아니라 방송광고 정책이나 제도, 그리고 아까 먼저 안건에서도 이야기됐지만 저희가 기계적으로 선례 답습적으로 허가해 주는 것이 방통위의 올바른 역할이 아니고,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어느 특정사업자가 잘 되고 잘못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방송시장 전체가 선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제도를 잘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연구과제를 쫓는 것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안이라도 도출해서 위원회에서, 중간단계에서라도 많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방송광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해서, 뭔가 방송시장 내지는 방송사업자들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저는 그동안 행정예고기간에 의견을 준 미디어렐 사업자나 중소방송사들의 고충이나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부분적인 조정보다는 좀 더 크게 우리가 검토해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사무처에서 이야기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고시내용을 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마도 이것은 개정안을 검토한 의견이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침해한 사안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적하셨듯이 몇 개 방송사를 어디로 옮기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광고시장, 그다음에 미디어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될 사안인데 현재 그 정책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

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간단히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미디어랩 고시를 개정해서 부분적으로 정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광고라는 것이 지상파방송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재원이고, 그 시장 전체가 현재 침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광고제도 등 큰 틀에서의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가 지상파방송의 핵심 재원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방송사업자 간에 상당히 첨예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업무는 원칙을 가지고 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도 분명히 있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아주 짧은 호흡으로 정책을 결정해서는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2년에 최초로 시행된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맞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때 법이 시행되고 고시가 새롭게 시행되면서, 특히 KOBACO의 경우 방통위에 'MBC네트워크 지원방안'을 제출해서 승인받았지요?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때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MBC와 지역MBC 간의 5년 평균 매출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직전 5개년도 평균 광고 판매비중을 유지하겠다, 이것이 MBC본사와 지역MBC, 그리고 KOBACO 간에 합의된 것이지요?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지역MBC 지원을 위한 KOBACO의 승인조건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 KOBACO의 승인조건이지요. 그런데 2013년도 연평균, 그다음에 금년 7월이니까 4월까지는 결산이 나왔겠습니까만 지금 이것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지금 지역MBC와 MBC본사 간의 비율이 평균대비 한 90% 정도….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은 전체 매출이고요.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퍼센티지로 했을 때 10% 정도 미달된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은 전체적인 지상파 광고의 광고시장이 위낙 좋지 않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인지하셨다면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은 분기별로 지역MBC의 광고매출액이 어떻게 됐는지 실적을 받고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쪽에서 제출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KOBACO 쪽이나 MBC본사에서 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출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점검하셨으니까 그쪽 의견을 또 받았을 것 아닙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지난번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MBC본사와 지역MBC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서 한 번 회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어려움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방송광고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KOBACO나 MBC가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그것을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고, 방통위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킬 수 있

도록 계속 독려해야할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냐하면 그것이 승인조건입니다. 승인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내지는 개선하도록 저희들은 감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관련해서 KOBACO나 MBC는 시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광고시장 침체에 따라서 본사도 어렵겠지만 지역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지적합니다.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결합판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취지가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소 취약매체도 열악한 재정적인 사항을 보완해 주기 위해 생긴 제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난 미디어랩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재에서 판결이 결합판매는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미디어랩법이 생기면서도 복수화되면서 그전에 유지됐던 결합판매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제가 어떻게 보면 메인, 주 방송사들이 그런대로 경제적인 광고시장에서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여력을 가지고 중소방송사도 판매지원을 해 주시라는 뜻으로 이 결합판매라는 제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런데 요즘 같이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결합판매의 주체가 되고 있는 주 방송사들이 광고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고 적자상태에 빠져 들어가 있다는 것이 대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결합판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각 방송사별로 퍼센티지를 정해서 결합판매 비율을 정하는 고시를 우리가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결합판매라는 것이 제대로 유지되려면 기존의 주 방송사들이 제대로 영업을 되어야 그 여력으로 결합판매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중소방송사들을 도와주기 위해 결합판매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메인이 되고 있는 회사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면 과연 누가 메인이 되는 회사의 결합판매를 누가 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결합판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유지하면서 고민하겠지만 방송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큰 틀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이 결합판매의 의미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이러한 광고시장 전체의 문제점,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광고의 전체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광고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속하게 검토해서 의견이 모아지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상파의 방송광고 시장의 축소로 인해 그 여파가 각 중소방송사 또 지역방송사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연구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고시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습니다.

##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말씀하시지요.

○ 김재홍 상임위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불복해서 불만이 있는 당사자들이 재심신청을 했고, 그 재심이 결국 기각된 4건에 대해서 서면회의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대전제는 방통심의위원회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일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최근에도 거기에서 각하된 건이 행정소송이 제기되어서 행정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많아지면 방송통신심의 자체의 권위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가 정말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심의한 것을 그대로 처분권만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소가 제기되면 행정소송 법정에 책임지고 나가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당국자가 나가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심위 실무자가 나와서 같이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취지는 최소한 재심절차라도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를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가 법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행소에서 패소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방송통신심의 최소한 재심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에도 위원님들 간에 한 번 논의한 적이 있고, 또 저희가 마련 중인 정책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서로 논의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재심 청구했다가 각하된 4건의 내용을 보면 하나는 YTN의 선거방송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기독교방송 '김현정의 뉴스쇼' 많이 알려진 박창신 신부에 대한 인터뷰 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방송 EBS의 프로그램, 뉴스 토마토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들여다보니까 팩트에 관련되어서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팩트에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논평과 토론 내용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언론 기능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심의하는 결과가 행정소송이 걸려서, 가서 패소하는 결과를 가져오면 이것은 정말 방송통신심의가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규제가 아니냐는 여론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께서 방심위 심의내용에 대해서 방통위가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해 왔고, 또 앞으로도 논의할 예정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옛 방송위원회에서 방송에 대한 정책규제와 내용심의까지 같이 했었을 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방통위 설치법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기구를 이원화해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방심위가 내용심의 한 것에 대해서, 방심위가 행정기관의 법적지위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행정절차상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만 지금 내용에 대해서 가타부타, 여기까지 만약에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통위 위원님들 간에 앞으로 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방통위와 방심위 이 체제에 변화를 주는 논의라면 그것은 방통위 차원의 논의를 넘어서는 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 고삼석 상임위원

-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김재홍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도 현행법상 방통위원회가 단순히 행정절차상으로 하는 기능 외에는 없다는 것은 아는데, 분명한 것은 재심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결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결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은 차치한다 할지라도 이 시스템이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한 것이 재심을 하든 아니면 그냥 바로 법원 소송으로 가서 벌써 세 번 연속 패소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그러면 차라리 시스템을 개편해서 방통위원회의 위원들이 형식적으로 결재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시스템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반을 구성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략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의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그런 면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차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격을 달리 평가해서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바람직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의결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표현 자체가 마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이러한 결정을 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결정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국회 일정 등 때문에 7월 9일 수요일 오전 9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05분 폐회 】